

## 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05. 2. 11 훈령 제4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단송유관(TKP)의 인덕원역 주변의 누유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토양 및 지하수 복원방안
2. 복원진행에 따른 적정성, 효율성, 안전성
3. 복원시설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
4. 기타 복원과 관련한 사항

②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자문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양관련분야, 지하수관련분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2. 토양 및 지하수정화 관련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3. 기타 환경에 관한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회의) ① 시장은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에 따라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복원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① 자문단은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환경지도팀장을 서기로 한다.

제7조(실비변상)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복원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복원사업의 완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